



의안번호	제 2019 - 6호
의 결 연 월 일	2019. 1. 14. (제92차 정기회의)

의결안건

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 
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 의 건

제 출 자	운영지원단장
-------	--------



## 1. 의결주문

「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계획안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 및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형기준안에 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양형기준 심의·의결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공청회 개최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「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계획안」을 의결하여 운영지원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



별지

#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계획안

## I. 목적

- 양형기준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, 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·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공
- 양형기준 설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

## II. 공청회 일시·장소

- 일시 : 2018. 2. 11.(월) 14:00 ~ 18:10
- 장소 :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

## III. 공청회 참석자

### 1. 진행 관련

- 인사 말씀 : 양형위원회 위원장
- 공청회 사회 : 상임위원
- 개회식 진행 : 운영지원단장

## 2. 양형기준안 발표자

- 수석전문위원
  - 양형기준안 작성 실무를 담당한 전문위원단을 대표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양형기준안에 대한 소개를 담당
  - 전문위원 연구성과를 토대로 공청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

## 3. 지정토론자

- 양형기준안 논의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점을 감안하여 양형에 관한 관심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, 교수, 시민·사회단체 관계자, 유관기관 간부 등으로 구성
- 양형기준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토론자는 범죄별로 각 2인으로 구성

## IV. 공청회 일정

- 개회 선언
- 양형기준안 발표
- 지정토론
- 방청객 질의 및 답변
- 폐회

## V. 공청회 진행(안)

### 1. 진행 순서

시 간	행사 내용	비 고
14:00 ~ 14:05	개회식	운영지원단장
14:05 ~ 14:10	인사말씀	양형위원회 위원장
14:10 ~ 14:40	<b>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설명</b>	수석전문위원
14:40 ~ 15:20	지정토론 및 답변	지정토론자
15:20 ~ 15:30	방청객 질의 및 답변	
15:30 ~ 16:00	휴식	
16:00 ~ 16:15	<b>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 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</b>	수석전문위원
16:15 ~ 16:45	지정토론 및 답변	지정토론자
16:45 ~ 16:50	방청객 질의 및 답변	
16:50 ~ 17:00	장내정돈	
17:00 ~ 17:15	<b>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</b>	
17:15 ~ 17:45	지정토론 및 답변	
17:45 ~ 17:50	방청객 질의 및 답변	
17:50 ~ 18:00	마무리 및 폐회	운영지원단장

## 2. 토론 주제

### 가. 대상 기준안

- 위원회 제92차 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명예훼손범죄, 유사수신행위  
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

### 나. 토론 쟁점

-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또는 형량범위의 적정성
-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
-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

## 3. 발표 및 토론 방식

- 양형기준안 발표 및 지정토론자 토론  
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형기준안 발표자가 준비된 양형기  
준안을 소개한 후 지정토론자의 토론 진행
- 방청객 질의  
사회자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방청객이 자유롭게 의견을 진  
술하거나 질문하고 그에 대해 지정토론자와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 
방식으로 진행

## 4. 기타 사항

- 공청회에서의 발표 및 의견진술 내용은 공청회 주제와 직접 관련  
된 내용에 한정
- 공청회 사회자는 공청회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표 내용을 제한할  
수 있고, 그밖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